

집단소송 합의 공지
미국 연방 법원 뉴욕 동부지원 허가

**62억 4천만 달러 이하, 55억 4천만 달러 이상의
합의를 통해 2004년 이후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은 가맹점에게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본 공지는 연방 법원의 명령이며 본 공지는 변호사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 법원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MDL 1720 (MKB)(JO)로 명기된 집단소송 재판에서 최대 약 62억 4천만 달러에서 최소 55억 4천만 달러의 합의 제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본 재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개별적으로 또는 회원사 은행과 함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은 가맹점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에 대한 건입니다.
- 합의를 통해 다음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이 구성됩니다.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된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또는 (d)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거래를 인수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된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자신의 소송을 각하한 원고 및 그러한 원고와 관련된 실체입니다. 귀하가 각하된 원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 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 본 공지는 2004년 1월 1일 이래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은 가맹점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재판의 합의에 대한 설명 및 본 소송건에서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체 합의 내용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에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피고의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확정 약정 및 부록("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조회하거나 1-800-625-6440 으로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지상의 내용과 집단소송 합의 계약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집단소송 합의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 합의와 관련된 최신 정보 또는 합의 승인 진행절차에 대한 사항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사항은 본 조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상금 청구: 이는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자진 탈퇴: 이는 본 소송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또 다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인을 제외할 경우, 본 합의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소송의 청구에 근거해 금지명령 구제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탈퇴하지 않으면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Barry's*")인 본 법원에 계류 중인 제안된 규칙 23(b)(2) 형평법상의 구제 집단소송을 통해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은 다른 집단소송 대표자 및 다른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이 대리합니다. (10 번 및 13 번 질문 참조).

이의 제기: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본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요청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비용이나 거론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 법원에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14 번 및 18 번 질문 참조)
- 본 합의의 공정성 또는 요청한 변호사 비용 또는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법원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 번 질문 참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보상금 청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 소송건의 보상 청구에 대한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본 법원에 계류 중인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만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번 및 13 번 질문 참조).

기한: 합의에서 본인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합의에는 포함되고 싶지만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2019 년 7 월 23 일**까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송자의 권리 및 선택 사항과 모든 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24 번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4
1. 제가 이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5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5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6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6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6
합의의 혜택	7
7.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7
8.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7
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8
9. 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8
10.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9
1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1
12.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본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
13.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를 손해 또는 금지명령 구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2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2
14.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15. 소송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14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14
16.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누구인가요?	14
17. 변호인과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5
18. 변호사 비용, 지출 비용 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법원의 공정성 심리	17
19.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17
20. 보상금을 받으려면 심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17
21. 심리에서 발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18
22.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8
자세한 정보 구하기	18
23.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18
면제조항 전문	19
24.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책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19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기본 정보

1. 제가 이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자료는 미국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원의 집단소송 재판 시 소송인의 권리 및 선택 사항에 관해 알려주는 공지입니다. 마고 K. 브로디 판사와 제임스 오런스타인 치안 판사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MDL No. 1720 (MKB)(JO)로 명명된 본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지는 소송, 제안된 합의, 받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수혜 자격 및 수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소송건을 시작한 회사 또는 법인을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회사를 "피고"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은 가맹점을 위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건을 제출한 특정 가맹점은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이며, 법원은 이들이 본 소송건의 제안된 합의와 관련하여 아래에 기술된 집단소송의 모든 가맹점을 대신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Photos Etc. Corporation DBA ScanMyPhotos.com, Traditions, Ltd., Capital Audio Electronics, Inc., CHS Inc., Discount Optics, Inc., Leon's Transmission Service, Inc., Parkway Corporation 및 Payless Inc.

원고가 고소한 회사는 "피고"입니다. 피고는

- 네트워크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및 Visa Inc.,

“마스터카드”: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an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 “은행 피고”: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rclays Bank plc, Barclays Delaware Holdings, LLC(이전의 Juniper Financial Corporation), Barclays Bank Delaware(이전의 Juniper Bank), Barclays Financial Corp., Capital One Bank (USA), N.A., Capital One F.S.B.,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Chase Bank USA, N.A.(및 Chase Manhattan Bank USA, N.A. 및 Bank One, Delaware, N.A.의 합병회사로서), Paymentech, LLC(및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 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 Co.(및 Bank One Corporation 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Bank, N.A.(및 Washington Mutual Bank 의 합병회사로서), Citibank, N.A., Citigroup Inc., Citicorp, Fifth Third Bancorp,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및 National City Corporation 의 인수자로서), National City Corporation,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SunTrust Banks, Inc., SunTrust Bank,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및 Wells Fargo & Company(및 Wachovia Corporation 의 합병회사로서).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 소송은 주로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부과된 정산 수수료 및 그러한 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대한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의 주장은

- 비자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비자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의 일부에 관해 공모하였습니다.
- 비자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비자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건이 제기된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마스터카드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건이 제기된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피고의 행태는 가맹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기존 행태를 고수하지 않았다면, 정산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들의 사업 관행이 독립적인 경쟁의 결과로, 가맹점과 고객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할 때, 그러한 거래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가 있는데 통상 구매 가격의 약 1%에서 2%에 달합니다. 정산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는 각기 다른 유형의 거래에 대한 정산 수수료를 정하고, 1년에 2회 정도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했습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집단소송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적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업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사한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들은 함께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합의를 승인하면, 이는 모든 집단 구성원(탈퇴한 집단 구성원 제외)에게 유효합니다. 본 소송 건에서, 법원은 합의 및 아래 6 번 질문에 정의한 2 가지 집단소송에 대해 예비 승인을 하고 본 공지의 우편 송달을 승인했습니다.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법원은 어느 쪽 당사자가 옳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측이 소송건에 합의할 것과 재판 및 재판 이후에 있을 항소심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본 소송 건에서 합의는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경륜 있는 중재인 입회 하의 중재 등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물입니다. 본 소송 건의 합의로 집단 구성원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변호인단은 본 합의가 모든 집단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13 년 간의 장기 연장 소송분쟁 후, 본 건에 대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증거 개시 기간 동안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는 6 천만 페이지 이상의 문건을 검토 및 분석했으며, 사실 및 전문가 진술을 포함하여 550 회 이상의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 초기에 기각 신청, 약식 판결 신청, 전문가 증언 제외 신청 및 집단 인가 신청이 서면 및 구두로 모두 이루어졌으며, 법원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본 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피고의 기록에 귀하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을 것입니다.

2004 년 1 월 1 일에서 2019 년 1 월 25 일까지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및/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된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또는 (d) 2004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 월 25 일까지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거래를 인수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된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을 각하된 원고 및 해당 원고와 관련된 법인입니다. 해당 원고는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B 에 나열되어 있으며 사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하된 원고에는 부록 B 에 나열된 원고와 관련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각하 원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 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이 집단소송 정의에 명시된 합의 예비 승인 날짜는 2019 년 1 월 25 일입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본 합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래 연락처로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625-6440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에서 확인,

우편 주소: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합의의 혜택

7.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합의 내용에 따라,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본인을 제외시킨 집단 구성원에 따라 최대 약 62억 4천만 달러 및 최소 55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집단소송에서 본인을 제외시키지 않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모든 가맹점으로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한 가맹점("승인된 청구인")은 합의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합의금에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본인을 제외시킨 가맹점("탈퇴인")을 위한 금액인 7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 차감될 것입니다. 제외된 가맹점들을 위해 차감한 후의 나머지 합의금은 또한

- 법원 승인에 의거한 합의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적용되는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 법원 승인에 의거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집단을 대표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상금 및
- 법원 승인에 의거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합의의 보상금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할 경우에만 배분됩니다.

8.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본 합의에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유효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승인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또는 본 합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625-6440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에서 확인,

우편: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받게 되나요?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 카드 거래(귀하와 귀하의 고객 간)와 관련된 실제 또는 산정된 정산 수수료에 근거합니다.

각 승인된 청구인이 합의 보상금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은 청구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제출된 모든 정당한 보상 청구의 달러 가치, 7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위에 기술한 탈퇴자에 대한 금액, 집단소송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대한 적용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경비, 그리고 집단소송 합의로 종결된 MDL 1720의 가맹점 대리인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사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9. 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원이 합의(아래의 "법원의 공정성 심리" 참조)를 승인할 경우, 법원은 보상금 청구 양식을 승인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청구서를 제출할 기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보상금 청구 양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될 것입니다. 청구 양식은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것이며, 아래 수신자 부담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본 웹사이트에서 전자 형식의 양식을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서 형태의 청구 양식을 반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집단소송 담당관은 피고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래에 대해 각 승인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급된 정산 수수료"). 현재의 의도는 본 정보를 가능한 범위까지 이용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타당한 이유에 의해 확인 불가능하거나 또는 집단 구성원이 집단소송 담당자가 산정한 정산 수수료 지급금의 청구 금액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정보에는 공개된 정보에 한하여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집단 구성원의 가맹점 범주 코드 및/또는 집단 구성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총 비자 및 마스터카드 거래량 및/또는 판매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가 공개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확인된 각 구성원을 위해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소송 담당관은 집단소송 구성원이 청구 금액이 계산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예비 정보입력 청구 양식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구성원은 청구 양식 또는 웹사이트 상의 정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 및 웹사이트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보상금 청구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I 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및 늦어도 2019년 6월 7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 개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상금 청구 사전등록 양식

집단 구성원은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전등록 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며, 본 소송 건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건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 양식은 재정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집단소송 구성원에게도 보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해당 가맹점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기한 전까지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회사는 귀하의 합의금 회수의 일부를 대가로 청구 양식 제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청구 양식을 이해하고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 담당자 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역시 무료입니다. 제 3자 청구 제출 회사에 대한 법원의 이전 명령은 사건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금 합의 집단소송(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은)은 보상금 지급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30번 조항에서 명시된 피면책 당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당 합의서의 약정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기타 피고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금전적 보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가 해결 및 면책됩니다. 면책은 다음 청구를 금지합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된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을 수 있는 또는 행태 및 규칙에 대한 청구. 여기에는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여타 행태 및 규칙에 근거한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미 발생했거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 합의의 예비 승인 시 존재했던 상기 언급된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즉 성격이 상당히 변경되지 않은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향후에 상당히 유사한 규칙에 근거한 이러한 청구는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합의의 판결 및 이러한 청구의 면책은 동일한 사실적 명제 원칙에 대한 연방법과 일치하고 그보다 범위가 넓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면책은 다음 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지 않았을 수 있는 행태 또는 규칙에 근거한 청구.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되었을 수 있는 행태 또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한 면책은 캘리포니아 시민인 가맹점을 대표하여 이루어지고 표제가 *Nuts for Candy v. Visa, Inc., et al.*, No. 17-01482 (San Mateo County Superior Court)인 캘리포니아 주 법원 집단소송에서 주장된 청구가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소송에서의 모든 유사한 또는 중복된 청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Nuts for Candy*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합의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그리고 승인하는 즉시 *Nuts for Candy*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Nuts for Candy* 소송 각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Nuts for Candy*의 원고측 변호인은 *Nuts for Candy*에서 6,226,6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 및 493,697.56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uts for Candy*에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 또는 지출 비용은 별도로 조달되며 이로 인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책은 금지명령 구제 청구 또는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Barry's*")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금지명령 구제 청구에 대한 명제인 선언적 구제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구제 청구는 특정 행태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 또는 토출 등 금전의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Barry's*에서의 모든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소송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나머지 가맹점은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최대 오(5)년까지의 기간 중에 신규 및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포기하여 면책합니다.

또한 면책은 표제가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인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특정 청구 또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표준 상업 분쟁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책조항 전문은 본 공지의 19-24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책은 면책된 청구에 대해 법률 언어로 설명합니다. 면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이 있는 경우

- 16 번 질문에 명시된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무료로 전화하거나
- 본인 부담으로 면책 및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Barry's*, *Nuts for Candy* 및 *B&R Supermarket* 사건의 집단소송 합의 약정 및 고소장 전문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중요! 이와 유사한 보상금 청구에 근거하여 기타 소송의 일부로써 본인의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본인을 제외시킴)해야 합니다.

1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본인을 제외시킴)하려면 다음으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2019년 7월 23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우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여 제 1 종 우편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익일 배송으로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위해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신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합니까?

편지에는 승인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가맹점 명]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규칙 23(b)(3) 집단소송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직책:
 - 가맹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가맹점의 납세자 번호:
-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려는 매장 또는 판매 장소:
- 각 매장 또는 판매 장소에 대해 기재:
 - 회사 이름:
 - 브랜드 이름 및 “사업체” 이름:
 - 주소:
 - 납세자 식별 번호:
- 각 해당 회사 또는 브랜드 이름에 대해 기재(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해당 시 모회사의 법인 이름: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카드를 받기 시작한 날짜(200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와 중단한 날짜(합의 예비 승인 날짜 이전인 경우):
 -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카드 거래를 취급한 모든 은행의 이름:
 - 취급 가맹점 ID:
-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본인이 사업체에서 맡은 직책:

경고! 기한이 지난 후 편지가 도착할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본 합의건에 참여한 구성원으로서 합의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12.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경우, 이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경우

- 본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 규칙 23(b)(3)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할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7월 23일**입니다. 탈퇴하려면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방문하십시오.

중요! 탈퇴할 경우, 지급금을 요청하는 보상금 청구를 하지 마십시오.

13.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경우, 손해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이유로 이러한 피고를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탈퇴할 경우 집단 합의 약정에서 설명된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최종 결정 후 5년까지 면책된 행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류 중인 제안 규칙 23(b)(2) 집단소송(*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기간에 대한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개별적으로 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4.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퇴하지 않을 경우,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 결정 시 그러한 이의제기를 고려할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알리나요?

아래 주소로 법원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아래 주소로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피고측 지정 변호인:

Matthew A. Eisenstein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601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3743

2019년 7월 23일까지 소인이 찍힌 이의제기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이의제기서에는 아래 내용을 써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No. 05-MD-01720 (MKB) (JO)
: :
:

이의제기의 내용

(가맹점 이름)은(는)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기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입니다.

(가맹점 이름)이(가) 이 집단소송의 구성원인 이유는 [사업체명 및 주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를 받은 기간 등 이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나열할 것]입니다.

(가맹점 이름)은(는) 본 소송 건의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의의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목록을 나열. 예: 현금 합의, 지급 계획, 공지 절차, 기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이와 동일한 이의로써 또는 동일한 이의의 일부로 변호사 비용 및 지출비용 또는 지명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관한 서비스 비용 지급 요청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제기의 이유:

본인의 각 이의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범조항 및 증거: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 주소:
- 전화번호:

내 변호인(있을 경우)의 연락처: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 소송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 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합의금의 지급 계획,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또는 지명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요청 등을 포함)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을 제외시키는 것(탈퇴라고도 함)은 법원에 본인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16.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소송인을 대변하기 위해 지명한 변호인단의 목록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들 변호사를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에서 소송인들을 대리하기 위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일한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집단소송 구성원이기 때문에,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K. Craig Wildfang
Robins Kaplan LLP
2800 LaSalle Plaza
800 LaSalle Avenue
Minneapolis, MN 55402

H. Laddie Montague, Jr.
Berger Montague PC
1818 Market Street
Suite 3600
Philadelphia, PA 19103

Patrick J. Coughlin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원할 경우 자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건을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법원에 이를 알리고,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 위의 주소로 이러한 통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17. 변호인과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합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까지 해당 소송건을 진행해 온 성과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법원에 적절한 현금 합의 보상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며, 집단소송 건을 위해 일한 모든 변호인 및 그 법무법인에 지급하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은 합의 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관리하고 합의 보상금을 배분하며, 모든 항소 건을 통해 진행되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 일반 시간당 요율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4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합의 또는 공지의 관리 비용 불포함)의 지급을 요청할 것이며, 8명의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각각의 실비 비용 및 서비스 비용의 환급은 집단소송 합의 약정으로 종결된 MDL 1720의 가맹점 대리에 대해 최대 25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지출 비용,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서비스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반드시 법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은 변호사 비용, 지출 비용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요청을 **2019년 6월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18번 질문의 지침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출 비용 및 서비스 비용 지급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비용, 지출 비용 및 서비스 비용 지급 요청서 사본은 신청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본 합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입니다.

18. 변호사 비용, 경비 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요청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과 지출 요청 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이의를 제기(반대)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비용 요청 및/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서비스 비용 지급을 평가 시 제기된 이의 내용을 재고할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려면, 아래 주소로 법원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아래 주소로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피고측 지정 변호인:

Matthew A. Eisenstein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601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3743

법원 서기, 집단소송 및 피고 담당 변호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귀하의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이의제기서에는 아래 내용을 써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No. 05-MD-01720 (MKB) (JO)
:
:

이의제기의 내용

본인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기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입니다.

본인이 이 집단의 일원인 이유는 [사업체명 및 주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카드를 받은 기간 등 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나열하시오]입니다.

집단소송 변호인의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요청 및/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 지급의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의 이유:

본인의 각 이의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법조항 및 증거: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주소:
- 전화번호:

내 변호인(있을 경우)의 연락처: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1-800-625-6440 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정성 심리

19.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법원의 공정성 심리는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리 장소: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Brooklyn, NY 11201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 본 심리의 시간과 날짜는 추가적인 서면 또는 발표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리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심리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리에서는 합의가 공정하고 적합하며, 타당한 지의 여부에 관해 다루게 됩니다.

법원은 제기된 모든 이의 제기 내용을 고려하고,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서비스 요금 및 여타 비용 등에 대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의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20. 보상금을 받으려면 심리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심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심리에 참석하거나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21. 심리에서 발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주소로 출두 의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lerk of Court
225 Cadman Plaza
Brooklyn, New York 11201

본인의 출두 의사 통지서는 2019년 7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8번 질문에 나열된 주소 목록의 피고측 변호인 및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에게도 서신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출두 의사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본인이 출두 의사 통지서에 서명하고 아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 No. 05-MD-01720 (MKB) (JO)

- 출두 의사 통지서
- 본인은 (가맹점 이름)을(를) 대표하여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으로 명명된 본 소송건의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 정보:

-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
- 주소:
- 전화번호:

심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기타 소송 당사자(변호인 포함)에 대한 개인 정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22.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청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면책된 행태로 인한 손해 때문에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나열된 피고 및 기타 피면책 당사자에 대한 여타 소송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에 준거해야 합니다.

단,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된 선언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오(5)년 이전에 기간 중에 신규의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제외하고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 에 따른 모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자세한 정보 구하기

23.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몇 가지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에서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전체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 및
- 본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규칙 23(b)(2)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의 사본을 받으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우편 주소: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또는

전화: 1-800-625-6440 -(수신자 부담)

보상금 청구 양식을 편지나 이메일로 받지 못한 경우,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1-800-625-6440 으로 전화하십시오.

브로디 판사 또는 법원 서기에게는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면책조항 전문

24.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책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29.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개인적 및 집단적으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각 구성원이며,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명시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 현금 합의 보상금으로부터의 지급 청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 및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임원 및 이사, 주주, 대리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 그리고 신탁관리자,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사유지, 구매자, 피합병사, 합병사 및 양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30. "규칙 23(b)(3) 합의 집단 피면제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a)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ternational, Visa Inc., Visa Asia Pacific Region, Visa Canada Association, Visa 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Region, Visa 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Visa Europe Services, Inc.와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비자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b)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c)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 (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NB Holdings, MBNA America Bank, N.A. 및 FIA Card Services, N.A.

(d) Barclays Bank plc, Barclays Delaware Holdings, LLC(이전의 Juniper Financial Corporation), Barclays Bank Delaware(이전의 Juniper Bank) 및 Barclays Financial Corp.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e) Capital One Bank(USA), N.A., Capital One F.S.B. 및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f) Chase Bank USA, N.A.(및 Chase Manhattan Bank USA, N.A. 및 Bank One, Delaware, N.A.의 합병회사로서), Paymentech, LLC(및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 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 Co.(및 Bank One Corporation 의 합병회사로서) 및 JPMorgan Chase Bank, N.A.(및 Washington Mutual Bank 의 합병회사로서).

(g) Citibank(South Dakota),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및 Citicorp.

(h) Fifth Third Bancorp.

(i)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j)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및 HSBC U.S.A. Inc.

(k) National City Corporation 및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l)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및 PNC Bank, National Association.

(m) SunTrust Banks, Inc. 및 SunTrust Bank.

(n)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o) Wachovia Bank, N.A. 및 Wachovia Corporation.

(p)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로도 명기), 및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q) Wells Fargo & Company(및 Wachovia Corporation 의 합병회사로서) 및 Wells Fargo Bank, N.A.(및 Wachovia Bank, N.A.의 합병회사로서).

(r) 3 차 통합 개정 집단소송 고소에서 피고의 공모자로 주장된 각각의 및 모든 법인 또는 개인.

(s)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또는 Mastercard Incorporated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각 구성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

(t) 상기 30(a)-(s)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접 및 간접적 모회사(지주 회사 포함),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사(모두 1934 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표된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칙 12b-2 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50% 이상의 지분권을 가진 법인.

(u) 상기 30(a)-(t)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합병 회사 및 합병회사, 구매사 및 양도인(합병회사, 구매 회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t)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에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근거한 범위에서 피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v) 상기 30(a)-(u)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 신탁관리자, 동업자,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사, 법적 또는 여타 대리인, 신탁관리자,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사유지, 주주, 고문, 피합병사, 합병 회사, 구매회사 및 양도인(피합병사, 구매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u)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31.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본 최종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따라 내려진 최종 판결 외에, *기결사건* 취지를 포함하되 이하 아래 34 및 37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 여기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에 대해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의 지속 또는 지속되는 영향에 대해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일체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과거 가졌거나, 현재 갖고 있거나, 또는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 발생했거나 합의 최종 날짜 후 오 년 이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손해, 배상, 토출, 이자, 비용, 지출, 변호사 비용, 벌금, 민사상 또는 여타 처벌, 또는 여타 지급금, 또는 강제, 확인 청구,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일체의 청구, 요구, 행위, 소송, 소송 사유로부터, 본질상 개인적, 집단적, 대리적, *국천사상* 또는 그 외의 것이든 막론하고, 직접적, 간접적, 파생적으로 또는 그와 다르게, 그러한 청구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개의 여부, 의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문법상이든 형평법상이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를 명백하게 취소불능으로 면책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책한다.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면책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만 확장된다.

(b)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무작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청구는 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었을 수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청구라는 것에 명백히 동의한다.

(i) 모든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를 또는 정산 수수료 및 미국 내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미국 내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수수료를 설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칙,

(ii) 모든 비자 브랜드 카드의 미국 내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모든 가맹점 수수료,

(iii)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모든 발급 회사 수용” 규칙, “모든 기기 수용” 규칙, 모든 자격 증명 또는 계정 수용을 요구하는 규칙, “최소 구매액 지정 금지” 규칙, “할인 금지” 규칙, “차별 금지” 규칙, “호객 금지” 규칙,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특정 지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 “모든 매장” 규칙, “규제 금지” 규칙,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다수의 발급 회사 금지” 규칙, “다수의 버그 금지” 규칙, 라우팅 규칙, 해외 취급 규칙, 카드 인증 또는 카드 소지자 확인 규칙, “카드 소지자 선택” 규칙 또는 요건, PAVD 규칙, 모바일, 전자 상거래 또는 온라인 결제 허용과 관련된 라우팅 옵션에 대한 규칙 또는 행태 또는 토큰화 표준의 개발 및 구현,

(iv)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재개편, 기업혁신, 기업공개 또는 기타 상장, 또는 여타 기업 구조조정,

(v)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비스 또는

(vi) (A) 모든 비자 피고와 모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B)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사이 및 여타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또는 (C) 상기 (i)-(v) 또는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의 상기 (i)-(v) 적용, 준수 또는 고수와 관련하여 모든 피고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실제 또는 주장된 합의(또는 지속적인 참여 주장),

(c)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31 항에 명시된 규칙에 대한 언급은 합의 예비 승인 날짜 또는 그 전의 규칙 및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으로 실시되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이후에 실시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32.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또는 면책하지 않을 경우 전술된 29-31 조항에 포함된 면책의 범위 또는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준거법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면책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면책한다. 앞서 언급한 일반론을 제한하지 않고,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 면제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 1542 조 또는 여타 주나 사법권의 유사 법조항에 의한 면제와 관련하여 달리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포기 및 면제한다. 제 1542 조 조항: "일반 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청구. 일반 면제는 면제 시점에서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존재를 의심하는 청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와의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상기 전술된 29-31 항에서 면책된 청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알거나 믿고 있는 것 외의 사실 또는 이와 다른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지라도, 인멸 여부나 또한 그러한 여타의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차후 발견 또는 존재에 관계없이, 29-31 항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불확정 또는 확정 청구를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명백히 면책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책한다. 앞서 언급한 면책이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가 인정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33. 상기 29-32 항의 면책은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주권 또는 준주권 권익을 입증하기 위해 **국천사상**, 법 집행 또는 규제 등으로 명명한 것이든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관계없이 조사 또는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면책은 해당 청구가 본 소송에서 재정적인 회수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독점 권익에 따른 것인 범위 내에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청구를 제한한다. 또한 면책은 본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연인, 회사, 기타 비주, 비준주 및 비지방 정부 기관 또는 개인 당사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기한 손해, 배상, 부당 이득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명명된 청구를 차단한다.

34. 상기 29-33 항의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29-33 항의 면책은

(a) 지명된 대표 또는 비대표 집단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Barry's"), 전적으로 *Barry's*에서 주장된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참여를 면책하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면책하지 않는다. *Barry's*에서의 모든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합의 최종 날짜 이후 오 년 이전에 신규의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제외하고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Barry's*에서 준거로 할 수 있는 모든 면책 또는 판결의 조건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29-33 항의 어떠한 내용도 *Barry's*의 원고가 *Barry's*에서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금지명령 구제 요청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당사자들이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시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에서 주장되고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 사기 결제 카드 거래의 책임을 카드 발급 금융 기관에서 가맹점으로 전가하기 위해 상호 간에 불법적으로 합의했다는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대한 주장에 근거한 모든 청구.

(c)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상업 행위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상업 분쟁 또는 용자, 여신 한도 또는 여타 관련된 은행 또는 신용 관계에 관한 상업적 관계, 개별 청구취소 분쟁, 상품 책임, 품질보증서 내용 위반, 카드 소유자 정보의 유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맹점의 비자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허용에 관한 기술적 사양 준수 및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 간의 모든 약정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여타 분쟁에 근거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의 모든 청구. 그러나, 상기 29-33 항에서 면책된 모든 청구권이 정산 규칙, 정산 수수료율, 정산 수수료 또는 여타 규칙 수수료, 요금 또는 본 항이 아니라 상기 29-33 항에서 면책된 모든 청구권에 포함된 기타 행태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기 조항에 나와있고 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우선한다.

(d) (i)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 경쟁업체 또는(ii) 한 명 이상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ATM 운영자로서 입은 피해에만 근거한 청구.

35. 상기 34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에 (a) 상기 29-33 항에서 면책된 청구를 근거로 규칙

질문사항은 1-800-625-6440 으로 전화하거나 www.PaymentCardSettlement.com 을 확인하십시오.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를 고소, (b) 상기 29-33 항에서 면책된 청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개시 또는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제 3 자를 지원, (c)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비자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은행 피고의 참여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주장된, 상기 29-33 항에서 면책된 청구와 관련된 불법적이라고 주장된 수평적 음모에 계속 참여하거나 이를 철회하지 못한 합의 최종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의 최종 날짜 후 오 년까지 어떠한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및 서약한다. 단,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금지하지 않는다.

36.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집행과 관련한 청구건을 제외하고, 일정한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소송의 변론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은행 피고 및 그들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면책한다.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및 은행 피고는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집행과 관련된 청구건을 제외하고, 최종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집단소송의 시행 또는 기소와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본 집단소송의 여타 원고(*Barry's*에서 지명된 원고 제외),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 본 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체결하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를 위해 법원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집단소송 원고의 여타 변호인 및 집단소송 건의 전문가를 면책한다.

37.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이 하기 61-64 항에 의거하여 해지될 경우, 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29-36 항의 내용에 대한 면책 및 부제소 약정은 무효화 및 취소되며 시행 불가하다.